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0017
----------	-------

제출연월일 : 2014. 4.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나,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의 도입(안 제922조의2 신설)

- 1)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일정한 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의 도입(안 제924조)

- 1)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2)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친권 제한 사유가 단기간 내에 소멸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로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안 제924조의2 신설)

- 1)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2) 특정한 사항에 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친권을 전부 상실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로 친권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편제4장제3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24조의2 및 제9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25조 중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를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로 한다.

제9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의2의 제목“(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을“(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와 제3호”를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를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제928조 중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932조제2항 중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로 한다.

제9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의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친권의 상실 선고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924조 및 제9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第3款 親權의喪失</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u></p>
<p><u>第924條(親權喪失의宣告) 父또는 母가親權을濫用하거나顯著한非行其他親權을行使시킬수없는重大한事由가있는데에는法院은第777條의規定에依한子の親族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그親權의喪失을宣告할수있다</u></p>	<p><u>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u></p>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신 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신 설>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第926條(失權回復의宣告) 前2條의
原因이消滅한때에는法院은本人
또는第777條의規定에依한親族
의請求에依하여失權의回復을宣
告할수있다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
(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
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
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
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
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
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
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

용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4. (생략)

② (생략)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생략)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

-----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

<p>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p> <p>③ (생략)</p> <p><u>제946조(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u> <u>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u></p>	<p><u>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u> <u>-----.</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u> <u>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u></p>
--	---